

Q&A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Q 단층 철골조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피난층이라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층에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Q 지하주차장의 램프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하여야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 동조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에 적용하는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방시설을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이 화재보험료 산정에 적용이 되는지,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의 할인 등급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한국화재보험협회 점검결과에 의해 적용되는 화재보험 할인율은 3가지가 있으며, (1) 특수건물할인율(7%~32.5%), (2) 소화설비할인율(3%~60%), (3) 우량할인율(2%~10%, 공장에 한해 적용)을 업종 또는 업태에 따라 정해지는 화재기본요율에 곱하여 화재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1) 특수건물할인율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위험도, 공정위험도, 연소확대방지신뢰도, 자체소화신뢰

도를 평가하여 화재위험도지수 산출하며 업종별 등급기준에 따라 5등급체계로 분류됩니다.

(2) 소화설비할인율은 설치되어 있는 소방설비에 대해 성능 및 관리상태를 “소화설비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우량할인율은 공장물건의 화재보험 가입 및 손해이력과 화재위험도를 평가합니다.

Q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E/V홀 사이에 설치되는 문은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강화유리 도어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주차장부분과 다른 거실용도 부분과는 방화구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구획선상의 개구부에 설치되는 문은 방화구획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Q 습식스프링클러 헤드가 기계적 충격이나 외적 손상 없이 오동작할 경우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항상 가압수가 충수된 상태로 오동작의 원인으로는 헤드의 경년변화, 부식, 시공불량, 조립하중 불량, 수격, 피로현상 등이 있습니다.

이의 방지대책으로는 성능이 입증된 헤드의 사용, 주기적으로 설치된 헤드를 샘플링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의 성능시험, 시공 시 헤드의 외적손상 방지가 있으며, 설비자체를 습식으로부터 준비작동식설비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으나 습식보다는 반응이 느린 단점이 있고 감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비용적 부담이 있습니다.

Q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에 의한 소화약제량 산정 시 개구부에 따른 소화약제량 가산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개구부가 설치될 경우 약제량 가산이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소화약제량은 개구부가 없을 경우의 소화약제량 산정기준으로서 개구부가 설치될 경우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